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항만재개발및주변지역발전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rina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819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5. 5. 1. 시행)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에 관한 사무의 시·도기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6조 등)
-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재개발 사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예정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관보 및”을 “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,”로, “공고하고, 해양수산부”를 “공고하며, 관리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해양수산부의”를 “관리청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의”를 “관리청의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관보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한국지방행정

연구원 육성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관보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”로, “해양수산부의”를 “관리청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, 제8항,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관보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”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관보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관할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, 관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”로,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관보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

청”으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, “관보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의”를 “관리청의”로,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”를 “관리청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관보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6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사업계획안의 공모) ① <u>해</u>		제6조(사업계획안의 공모) ① <u>관</u>		
<u>양수산부장관</u> 은 법 제9조제1항		<u>리청</u> -----		
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		-----		
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관</u>		----- <u>관</u>		
<u>보</u> 및 둘 이상의 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		<u>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, ----</u>		
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<u>공고하고,</u>		----- <u>공고하며,</u>		
<u>해양수산부</u>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.		<u>관리청</u> -----		
1. ~ 6. (생 략)		-----.		
②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할 수 있다.	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③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선정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		② <u>관리청</u> -----		
		-----.		
		③ <u>관리청</u> -----		

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(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·게시하고,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·게시 및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

-----.

④ -----
----- 관리청 -----
-----.

제8조(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)

① 관리청 -----

----- 관리청의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관리청 -----

-----.

③ 관리청 -----

----- 관리청의 -----

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0조(사업계획의 고시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(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)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11조(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업계획의 고시) 관리청-----

----- 관보 또는 공보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) ① -----

----- 관리청-----
-----.

② 관리청-----

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연구기관”이라 한다)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, 적정 사업비·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관리청-----

③ 관리청-----

----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-----
-----.

④ -----

----- 관리청-----

-----.

완을 요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

----- 관리청-----

-----.

⑤ 관리청-----

-----.

⑥ 관리청-----

----- 관보 또는 공보-----
----- 관리청의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⑦ 관리청-----

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, 제6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.

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·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,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(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)와 제3자

-----.

⑧ 관리청-----

-----.

⑨ 관리청-----

관리청

1. (현행과 같음)
2. 관리청

[illegible]

1. 2. (현행과 같음)
- ⑪ 관리청-----
-

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(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구역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4조(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

--.

⑫ -----

관리청-----
---.

제12조(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) 관리청-----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관리청-----

제14조(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) 관리청-----

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
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
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8조(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
한 고시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
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
사업시행자를 지정(제11조제11
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
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
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
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9조(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)

① · ② (생략)

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0조(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
의 승인 등) ① 법 제17조제1항

--- 관보 또는 공보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
한 고시) 관리청-----

----- 관보 또는 공보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
_____ 관리청 _____

_____ 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
의 승인 등) ① -----

관리청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관리청-----

② 관리청

제22조(실시계획에 대한 시·도지사 등의 의견청취) ① 관리청-----

----- 해양수산부
장관, 관할 -----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23조(실시계획의 고시)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24조(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)

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

② -----
-----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-----
----- 관리청 -----

--.

제23조(실시계획의 고시) 관리청-----

----- 관보 또는 공보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)

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관리청 -----

② -----

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26조(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
의 고시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
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
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
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
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27조(인가·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·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(이하 “일괄협의회”라 한다)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.

제28조(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

----- 관리

청-----.

제26조(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
의 고시) 관리청-----

--- 관보 또는 공보 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인가·허가등 의제를 위한
일괄협의회) ① 관리청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
 _____ 관리청 _____

제28조(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) ① -----

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
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
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
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
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2. (생략)

3.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
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
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
요청하는 사항

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
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에 필
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한다.

제32조(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
차 등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
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
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
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
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(이
하 “원형지”라 한다)의 공급계
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

----- 관리청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관리청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관리청-----
-----.

제32조(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
차 등) ① -----

----- 관리청의 -----

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
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
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
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
출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
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
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
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
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
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
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
한다.

③ ~ ⑨ (생략)

제36조(준공확인) ① 사업시행자
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
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
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
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
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
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

----- 관리청에게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관리청-----

② -----
----- 관리
청-----

-----.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준공확인) ① -----

----- 관리청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관리청-----

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37조(준공 전 사용신고)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38조(공사완료의 공고) ①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40조(조성토지의 분양·임대)

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(이하 이 조에서 “조성토지”라 한다)를

-----.

제37조(준공 전 사용신고) -----

관리청-----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공사완료의 공고) ① -----

-- 관보 또는 공보-----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조성토지의 분양·임대)

① -----

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 ·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 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<u>해양</u> <u>수산부장관</u>이 정하는 사항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관리</u> <u>청</u>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86